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산직 정원 1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기에 이를 반영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한시정원 1명 증원(전산직 1명 : 2002년 12월 31일까지)
-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“537명”을 “538명”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“518명”을 “519명”으로 함.
- 이에 따라 조례 제567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부칙 제2조 [표2] 중 정원의 총수를 “557명”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을 “538명”으로 함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산직 정원 1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기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, 이에 따라 “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“537명”을 “538명”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 “518명”을 “519명”으로 하며, 조례 제567호 “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의 부칙 제2조 [표2] 중 정원의 총수를 “557명”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을 “538명”으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.
-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 제1항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”고 규정하고 있고, 대통령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 제21조와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, 한시정원의 존속기간과 그 정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한시정원의 경우,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동 규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본 건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「정보화기능 보강방침」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미리 그 한시정원 증원이 승인된 사항이고, 정보화 사업추진의 실무인력보강 차원에서 이를 반영하자는 것으로서 한시정원 증원의 타당성과 이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필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